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신매매퇴치 및 감시국(Offi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2017 년도 인신매매보고서

3 등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 등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기준 준수를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여전히 3 등급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사법 처리나 피해자 보호 혹은 예방 조치 등을 통해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수용소와 노동단련대에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학생들의 강제 노동을 가능케 하고, 외국 기업들과의 계약을 통해 강제 노동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인신매매를 후원했다. 정부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강제 송환된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권고사항

수용소와 해외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제 노동을 중단해야 한다. 기착국에서 강제 송환된 피해자들에게 사형을 비롯하여 가혹한 처벌을 선고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북한 내 인신매매 피해자와 국내로 강제 송환된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 인신매매를 불법화하고 밀입국과 구별되는 별도의 범죄로 인정해야 한다. 인신매매 사건을 수사, 사법처리하고 인신매매범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북한 근로자들을 인접국가에 파견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양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해외 파견 근로자의 이동과 통신을 감시하는 강압적 수단을 폐지해야 한다. 국제 인권감시단이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생활 및 근무 환경을 평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인신매매의 근절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과 협력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른 이직을 허용해야 한다. 2000년 유엔에서 채택된 인신매매방지(TIP) 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사법 처리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를 목표로 대외적으로 알려진 법집행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북한 법률은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금하고 있지 않다. 북한에서 공정한 재판은 보장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보고 대상 기간 중에 투명한 법집행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정부는 인신매매 사범을 처벌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로서 어떤 법률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지, 혹은 관련 조항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미확인 비정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범들은 그들이 착취한 사람들의 수에 근거하여 형을 선고 받는다. 희생자 수가 1~3명이면 10년 이상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용되고, 희생자 수가 4~6명이면 강제 노동 수용소에 무기한 수용되며, 희생자 수가 7명 이상이면 사형에 처해진다.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인신매매범에 대한 수사, 기소, 또는 유죄 선고 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방지 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는 보고된 바가 없다. 정부는 인신매매 범죄행위에 연루된 혐의로 공무원을 수사하거나 기소하거나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를 보고하지 않았다.

피해자 보호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거나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없다. 정부 당국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비정부기구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인신매매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행해진 불법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았으며,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에 대해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선별 작업이 수행되지 않았다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 노동, 간수에 의한 고문과 성폭력에 노출되었다.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강제로 송환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정부에 의해 사형에 처해진 사례들을 보고했다. 형법 제 30 조는 수용소 수감자의 시민권을 부분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관리들은 이 조항을 이용해 수용소에 있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확대했다. 보고에 의하면 정부는 임신한 상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피해자들에게 강제 낙태를 종용했으며 강제 송환된 피해자가 수감 중에 분만한 태아는 살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탈북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동 2~3 만 명이 현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 아동 중 일부는 출생신고가 불가능하여 무국적자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착취의 대상이 될 위험성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방 노력

정부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고하지 않았다. 북한 내 정부의 억압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탈북을 선택함으로써 기착국에서의 인신매매 위협에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거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인신매매 적발을 위해 국경 주변 이주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정부는 상업적 성행위에 대한 수요나 강제노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방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북한은 2000년에 제정된 유엔 TIP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인신매매 개요

지난 5년간 보고된 바와 같이, 북한은 강제 노역 및 성매매를 목적으로 성인 남녀와 미성년자를 인신매매하는 송출국이다. 북한 정부의 압제로 인해 상당수 주민들이 탈북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기착국 내의 인신매매에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 북한 내에서 강제 노역은 제도화된 정치적 억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 정부는 대규모 인력 동원을 통해, 그리고 자국 수용소 내에서 주민들을 강제 노역으로 내몰고 있다. 북한 정부와 계약을 맺고 해외로 파견되는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도 강제 노역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전국의 오지에 위치한 정치범 수용소에 약 8~12만 명을 수용하고 있다. 많은 경우 이들 수감자는 정식으로 입건 혹은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거나 공정한 사법적 심리를 거쳐 형을 선고 받지 않았다. 수용소에서 아동을 포함한 모든 수감자는 열악한 조건에서 장시간에 걸쳐 벌목, 채굴, 경작 등의 강제 노역을 강요받는다. 정치범들은 비위생적인 환경, 구타, 고문, 강간, 의료 서비스의 부재, 식량 부족에 처해 있다. 상당수 수감자는 수감 기간 중에 사망한다. 이러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망한 주민들의 사체는 화장로와 공동묘지를 이용해 처리된다.

북한 정부는 도, 지방 혹은 지구 단위로 ‘노동단련대’를 운영하면서 수감자들에게 단기간 동안 중노동을 강요하고 음식물을 거의 제공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구타를 포함하여 각종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보고에 의하면 당국은 불법 장사에 연루된 자나 무직인 자를 단련대에 수감하고 있다. 정부의 지시로 학교는 대학생들을 포함하여 14세 이상의 학생들로 하여금 1년에 두 차례, 최장 한 달간 농장에서 무급으로 일하도록 강제한다. 학교가 정한 작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학생은 신체적인 학대를 받는다. 또한 교장과 교사들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학생들을 강제로 농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을 착취한다.

외국 정부와 맺은 양자계약에 따라 정부에 의해 해외로 파견된 다수의 북한 근로자들도 강제노동 상태에 직면해 있다. 해외로 파견된 근로자 수와 그들이 북한 정부를 위해 벌어들인 수입 액수의 추정치는 편차가 심하다. 일부 추정치에 따르면 해외 근로자 수는 총 수만명에 달한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러시아와 중국에서 일하지만, 중동, 아프리카, 기타 유럽 및 아시아 국가에도 북한 근로자들이 파견되어 있다. 믿을 만한 보고에 의하면 이러한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상당수 북한 근로자들은 한번에 최장 3년 동안 제한된 임금을 받으면서 유해한 온도에서 장시간 과도한 노동을 수행하는 등 강제 노역의 징후를 보이는 근로 조건에 처해 있다. 북한 정부 소속

‘감시인(minder)’들은 그들의 이동과 통신을 제한하고 감시한다. 해외로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정부가 최종 배정하는 업무에 대한 선택권이 없으며 직업 변경의 자유가 없다. 이들 근로자는 탈출을 시도하거나 외부인에게 불만을 털어놓을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 대한 정부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위협을 받는다. 근로자들의 급여는 압류되어 북한 정부가 통제하는 계좌로 입금되며 북한 정부는 정부 사업에 대한 각종 ‘자발적’ 기여금 명목으로 급여의 대부분을 갈취하는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근로자는 노동의 대가로 북한 정부에 지급되는 금액의 극히 일부만을 수령하며 목표 작업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 보고에 의하면 일부 해외 파견 근로자의 임금은 당사자가 귀국할 때까지 징수되어 관련 기관에 의한 착취와 강압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다른 보고에 의하면 이들 근로자는 하루 평균 12~16 시간, 때로는 하루 최장 20 시간을 일하며 한 달에 하루나 이틀만의 휴일이 주어진다.

강제수용소 수감 혹은 사형 집행을 통한 가혹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북한 정부 체제는 인접국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혹행위와 인권 유린을 피해 중국에 밀입국한 북한 여성과 여아 1만여 명 중 상당수가 인신매매에 특히 취약하며, 일부 북한 여성들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인신매매범에게 현혹되거나 약물을 주입당하고, 감금 또는 납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자리를 제공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후에는 강제 결혼을 통해 매춘, 가사 노동, 농사일을 강요받는다. 이들 여성은 중국인이나 한국계 중국인 남성들의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거나, 집창촌 또는 인터넷 섹스 사이트를 통해 강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강압에 의해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 접대부로 종사한다. 이런 희생자들은 신분증명서가 없거나 중국 남성들의 아이를 낳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도망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중국 당국에 적발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어 노동 수용소에서의 강제 노역이나 사형을 포함한 가혹한 형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